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변산반도국립공원 스마트 증식장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51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유리온실 1동, 야외묘포장 1개소 증축, 토사방지 옹벽설치, 콘크리트 포장 등

마. 총공사금액: **금680,883,000원(금육억팔천팔십팔만삼천원)**

[추정가액: 511,880,000원 + 부가가치세: 51,188,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117,815,000원]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금563,068,000원(금오억육천삼백육만팔천원)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축공사업]**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 공사는 토목·건축 등 연계공정이 복잡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8. 27.(목) ~ 2026. 9. 4.(금)

나.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8. 27.(목) 13:00 ~ 2026. 9. 4.(금) 12:00**

다. 개찰일시 : **2026. 9. 4.(금) 13:00**

라. 개찰장소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및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경쟁입찰**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사. **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공사**입니다.
-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 차.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2)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 업종 중 건축공사업(0002)**을 등록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장소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63-580-7824)

6. 공동계약 : 해당없음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대체)합니다. 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 3)]**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바.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아.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1,541,426	5,362,418	7,085,254	704,621	3,430,754	14,958,379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동법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마.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같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위험성평가 이행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 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직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KNPS 계약자 행동강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입찰 참여 시 본 계약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계약 체결 시 계약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준공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한별 (☎ 063-580-7813)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박동민 (☎ 063-580-7824)
-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35)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박창섭(☎033-769-939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생략)

【붙임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 · 보건 이행점검)

-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 · 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3-00-00		
공정명	세부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 보건 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 선 예 정 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정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 (적당, 베인, 찢김, 등) 위험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천상)	4 (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정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 칙 제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천상)	4 (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정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진 위험	안전보건규 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천상)	4 (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정연	화학(물 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천상)	4 (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정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 칙 제516조 [청력보호 구의 지급 등]		5x4	5 (천상)	4 (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정연	작업특성 요인	인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 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천상)	4 (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정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 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 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천상)	4 (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를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 가스농도 측정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	◦ 환기장비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조명장비	☐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 소 화 기	☐ ☐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	◦ 안전장구	☐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안전교육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	◦ 환기장비	☐	☐
◦ 통신수단	☐	☐	◦ 안전교육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	◦ 조명장비	☐	☐
◦ 압력방출	☐	☐	◦ 소 화 기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측정일시(3회)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i>[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i> ○ ○ <i>[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i>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	◦ 잔류전하 방전	☐ ☐
◦ 제어차단기 내림		☐	☐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
◦ 잠금장치		☐	☐	◦ 단락접지기구 설치	☐ ☐
◦ 시험전원 차단		☐	☐	◦ 현장스위치 내림	☐ ☐
◦ 차단표지판 부착		☐	☐	◦ 차단표지판 부착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	◦ 보호구 착용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안전교육	☐	☐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조명장비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	☐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	☐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	☐
4. 개구부 조치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 조명설비	☐	☐	◦ 노면상태	☐	☐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작업계획서 작성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조명장비	☐	☐
◦ 사용장비 방호조치	☐	☐	◦ 보호구 착용	☐	☐
◦ 소화기 비치	☐	☐	◦ 안전교육	☐	☐
◦ 외부인 통제 조치	☐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i>[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i> ○ ○ ○ <i>[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i>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조명장비	
◦ 사용장비 방호조치		☐	☐	◦ 보호구 착용	
◦ 소화기 비치		☐	☐	◦ 안전교육	
◦ 외부인 통제 조치		☐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 사업기간 :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협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